

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광호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3호
「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와
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
장애인이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
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‘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’로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며,
- 또한 잘못된 목적규정의 약칭 사용과 인용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이 입법 목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